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지권 의원 발의)

| | |
|----------|------|
| 의안 번호 | 2617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11일
발 의 자 : 정지권 의원(1명)
찬 성 자 : 경만선, 김용연, 송아량,
우형찬, 이광성, 이광호,
이은주, 임만균, 최기찬
의원(9명)

1. 제안이유

- 재난 상황으로 인하여 위기에 빠진 공항버스 사업자에 대해 그 손실이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정면허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운행할 수 없는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사업자에 대하여 그 손실이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방법 및 절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 절차를 따름 (안 제8조제3항, 제4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일부를”을 “일부를 보조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따른”을 “따른 보조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 문서번호 | 2021081100000010 |
|------|------------------|

미첨부 사유서 (2호)

| | |
|------------------|------------------------------------|
| 요청인 : 정지권 의원 |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박주용 예산분석관 |
| 접수일 : 2021.08.11 | |
| 회신일 : 2021.08.11 | 내용문의 : 02-2180-7954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8조(한정면허)제3항 개정에 따라 비용이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제8조(한정면허)제3항 개정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보조규모 및 금액 등을 파악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예 산 분석 관 박주용

☎ 02-2180-7954

e-mail : pjooyong@seoul.go.kr